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양민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09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0년 12월 22일
발 의 자 : 양민규 의원(1명)
찬 성 자 : 강동길, 권순선, 김상진,
김생환, 김수규, 김용연,
문영민, 이동현, 이석주,
이호대, 전병주, 최기찬 의
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여성의 경우 매달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료 감면 사유에 여성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- 그러나 시립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서남권 돛구장 수영장의 경우 여성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조례상 감면대상에 제외되어 있는바, 이를 조례상 감면 대상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불비를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여성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 감면대상에 서남권 돛구장을 명시하여 규정함.(안 제10조제2호라목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호라목 중 “제1·2수영장 및 창동문화체육센터”를 “제1·2수영장,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및 서남권 돛구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2호라목 중 서남권 돛구장 수영장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7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.</p> <p> 가. ~ 다. (생 략)</p> <p> 라.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잠실 <u>제1·2수영장</u> 및 <u>창동문화체육센터</u> 수영장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.</p> <p> 마.·바. (생 략)</p> <p>3. ~ 5. (생 략)</p>	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. ----- -----.</p> <p>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 라. ----- ----- <u>제1·2수영장</u>, <u>창동문화체육센터</u> <u>수영장</u> 및 <u>서남권 돛구장</u> -----.</p> <p> 마.·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